학보·방송국규정 6-1-2

규정번호 6-1-2
제정일자 2013.7.1
최근개정 2023.8.7
개정차수 3차 개정
관리부서 학생복지팀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명지전문대학 학보·방송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능) 학보·방송국은 학보 발행을 통하여 학생들의 대학생활에 관계되는 교내·외의 새로운 소식과 연구동향 및 지식을 전달하고 현대적 교양을 갖춘 건전한 민주시민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, 방송을 통한 학문의 보급과 신속 정확한 공지 사항의 보도, 정서 함양을 위한 음악방송, 민방위훈련에 필요한 방송 등 대학문화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.

제3조(사업) 학보는 연간 7회 학기 중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, 학보발행 이외에 학교 내 방송보도, 특별방송, 민방위훈련 수행에 필요한 방송, 등 학생들의 대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서교양사업을 할 수 있다.(개정 2023.08.07.)

제4조(관계법규의 준수 및 금지사항) 학보·방송국은 신문잡지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, 전파관리법과 방송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한다.

제2장 기구조직

제5조(구성) ① 학보 관련은 발행인·주간교수·간사 및 학생기자로 구성하고, 편집부, 취재부, 문화부를 둘 수 있다.

② 방송 관련은 국장·조교 및 학생방송요원으로 구성하고, 방송보도부, 방송기술부, 방송제작부, 방송아나운서부를 둘 수 있다.(개정 2021.06.21.)

제6조(발행인) 총장은 학보·방송국의 발행인이 된다.

제7조(주간) 주간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8조(간사) 간사는 일반조교로 임용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9조(학생기자) 학생기자의 자격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1. 학생기자는 2학년 정기자와 1학년 수습기자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정기자 중 1명을 학생편집장으로 주간의 제청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다.
2. 학생기자는 매년 1학년 재학생 중에서 공개모집하며 주간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3. 학생기자는 주간 및 간사의 지도를 받아 학보·방송국의 제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제3장 회 의

제10조(지도위원회) 학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신문방송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제11조(위원)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교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보·방송국장이 되고 학생지원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 (개정 2020.02.17.,2023.08.07)

제12조(위원회의 임무)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보·방송국의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
2. 학보의 기본 편집방향의 결정
3. 기본방송지침의 결정
4. 대외행사의 참가결정
5. 기본시설의 확장 및 변경에 관한 일

제13조(의결)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
제4장 예 산

제14조(재정) 학보·방송국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신문방송위원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.(제3조, 제11조)